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	법 개정
1	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1)	-	-	주 1)
2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2)	○	○	주 2)
3	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3)	-	-	주 3)
4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3)	-	-	주 4)
5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3)	-	-	주 5)
6	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호투자회사	3)	-	-	주 3)
7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3)	-	-	주 7)
8	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	3)	-	-	주 3)
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	3)	-	-	주 6)
10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3)	-	-	주 5)
11	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3)	-	-	주 5)
1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-	-
13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	-
14	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○	-
15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(주식)	-	○	-	-
16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-	○	○	-
17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8	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
19	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	-
20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	-
21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-	○	○	-
22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-	○	○	-
23	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- 2) 클래스 명칭 변경
- 3) 대표이사 변경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12월 07일 (화)

4. 변경 내용:

1) 환매수수료 삭제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, 30 일 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	환매수수료 없음

2) 클래스 명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클래스 명칭>	종류 A [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] 종류 A-e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	종류 C [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] 종류 C-e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

3) 대표이사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74조(발기인의 성명, 주소)	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.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<b>김 미 섭</b> (인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Tower 1 13 층 (청진동, 그랑서울)	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.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<b>이 병 성</b> (인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Tower 1 13 층 (청진동, 그랑서울)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	5	-	1.14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3	3	11.51	14.1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2	2	22.65	23.5
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1	1	26.99	26.2
미래에셋슬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02	3.3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1	2	26.52	21.89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1	2	25.03	20.27
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2	2	18.4	18.51

5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
주1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b>투자신탁재산</b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b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다.

		지 아니하다.
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&lt;신설&gt;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2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주3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신설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<u>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</li> </ol>

		<p><u>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③<u>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5. <u>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④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	--	---

주4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	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</u>	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</u>

	<p>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
<p>제67조의 2(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</p>	<p>&lt;신설&gt;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 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 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 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 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5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 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li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 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 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 우</u></li> </ol>

		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5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65조(해산)	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 1. ~6. <생략> 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 1. ~6. <생략> 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 <u>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u> 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 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 3. 「 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 ③ <u>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u> 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

		<p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p> <p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5. <u>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	--	--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6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	<p>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
제66조(해산)	<p>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/p> <p>1. ~6. &lt;생략&gt;</p>	<p>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/p> <p>1. ~6. &lt;생략&gt;</p>

	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신설>	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5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6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8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9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10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11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li>12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/ol>



		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7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	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